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084

발의연월일: 2023. 2. 17.

발 의 자:어기구・위성곤・오영환

이개호 · 김원이 · 박 정

박광온 · 주철현 · 박상혁

김승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있으나,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양식장에 대한 기본정보, 주요 정책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첨단 양식업 육성, 면허 심사·평가, 어업재해 관리, 양식장 임대 운영, 수급 관리 등 양식분야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왕 <u><신 설></u>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 체계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 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